



---

2023회계연도 제2회

## 군산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

---

2023. 12. 26.(화)



[사무국 재무과]

2023회계연도 제2회

## 군산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3. 12. 26.(화) 14:00 ~ 15:00

2. 장 소 : 제1소회의실(대학본부 4층)

### 3. 회 순

1. 개회
2. 임시위원장 개회선언
3. 안건상정
4. 폐회

### 4. 참석현황

- 출석위원(9명): 엄기욱, 장민석, 윤영진, 조혜영, 윤기창, 박경원, 김준성, 배현정, 온승조
- 불참위원(6명): 이호근, 오정근, 정용진, 박인수, 이도경, 김연수
- 참석교직원(2명): 김상용(교무과 팀장), 노예림(교무과 주무관)

### 5. 상정안건

- 군산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
- 군산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
- 군산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

### 6. 심의결과

- 군산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: 윤기창 위원 선출
- 군산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: 원안가결
- 군산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: 수정가결

### 7. 회의내용

- 간 사: 안녕하십니까? 지금부터 군산대학교 2023회계연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를 (전영아) 개최하겠습니다. 오늘 주요안건은 「군산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」, 「군산대학교 재정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」, 「군산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」입니다.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임시위원장은 선출하겠습니다. 위원들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위원 엄기욱 학생처장님을 추천합니다.  
(김준성)
- 간사: 엄기욱 위원님 추천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? 없으시다면 엄기욱 위원님을  
(전영아) 오늘 재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
- 위원 동의합니다.  
(전체):
- 간사: 네, 그럼 임시위원장은 엄기욱 처장님으로 선출하고 임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.
- 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? 본 회의 진행을 위한 성원 보고입니다. 군산대학교 재정  
(엄기욱) 위원회 위원 총 15명 중 9명이 참석하여, 군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 
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 
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. (의사봉 3타)  
첫 번째 안건으로, 「군산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」을 상정합니다.  
(의사봉 3타) 국립대학교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 
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는 바, 일반직  
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분들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위원 HASS대학 경영학과 윤기창 교수님을 추천합니다.  
(김준성)
- 임시위원장 본 추천건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?  
(엄기욱)
- 위원 동의합니다.  
(전체):
- 임시위원장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.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윤기창 위원님으로 선출되  
(엄기욱) 었음을 선포합니다.(의사봉 3타) 위원장님의 수락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이  
후 회의는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.
- 위원장: 재정위원장으로 선임된 윤기창입니다.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 
(윤기창)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학교 재정을 효율적으로  
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  
이어서 두 번째 안건으로 「군산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 
규정 일부 개정안」을 상정합니다.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제안설명  
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교무과팀장 배포된 회의자료에 의거 「군산대학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 
(김상용)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」에 대하여 설명함.  
- 학칙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사항 반영(교육혁신처장)
- 위원장: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. 질문이나 의견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 
(윤기창) 바랍니다.
- 위원장: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, 표결에 들어가도록  
(윤기창) 하겠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
- 위원: 동의합니다.  
(전 체):
- 위원장: 본 안건에 대해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전원 거수)  
(윤기창) 전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. 찬성 9표, 반대 0표,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 
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의사봉 3타)  
세 번째 안건으로 「군산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규정  
시행세칙 일부 개정안」을 상정합니다. (의사봉 3타) 본 안건에 대해서도  
학교 측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교무과팀장: 배포된 회의자료에 의거 「군산대학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 
지급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」에 대하여 설명함.  
(김상용) - 학칙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사항 반영 및 교육부에 제출한 지급계획  
변경사항 반영 등
- 위원장: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. 질문이나 의견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 
(윤기창) 바랍니다.
- 위원: 취업지원과가 2023.6.30. 자로 취업지원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세칙  
(엄기욱) 제5조 제2항의 제4호의 '취업지원과'를 '취업지원실'로 수정해주시고  
전체적으로 검토 후 부서명을 현행화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위원장: 의견 감사합니다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수정사항은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 
(윤기창) 하겠습니다.  
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위원: 현재 우리학교의 명칭이 '국립군산대학교'로 변경되었는데, 그럼 규정이나  
(장민석) 시행세칙에도 '국립군산대학교'로 명칭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?

- 교무과팀장: 학칙 개정이 공포 되면 관련부서 총무과에서 모든 규정에 대하여 일괄 ‘국립(김상용) 군산대학교’로 수정할 예정입니다.
- 위원: 답변 감사합니다. 이전에는 학생지도영역에서 남은 금액이 2월 초에 연구영역으로 배정되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, 올해의 계획도 작년과 같습니까?
- 교무과팀장: 이전에는 1월 말에 학생지도영역 실적분이 최종 취합 되었는데 올해는 12월(김상용) 27일까지 직원별 불용액을 조사 중이며 1월 초에 집행 예정액을 정리하여 연구영역에 배정할 예정입니다.
- 위원장: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중 연구영역 연구성과의 지원액 조정 및 기중치(윤기창) 적용 문구가 삭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- 교무과팀장: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지도영역 잔액을 연구영역으로 배정하여 논문(김상용) 게재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, 게재된 논문들에 대하여 기중치 적용을 하다보니 제출된 논문들이 100% 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. 예를 들어 논문 두개 제출 시 200% 적용이 안되고, 두 번째 논문에 대하여는 기중치 적용으로 70%만 적용되는 등 제한이 있어 연구영역에 배정된 금액이 모두 집행되지 못했습니다. 따라서 불용액 발생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급기준의 기중치 적용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- 위원: 기중치 적용이 없어져 제출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100% 실적이 인정된다면(조혜영) 그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지,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?
- 위원: 일단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지급하고, 만약 전체 집계를 했을 때 배정된 예산보다(장민석) 초과가 된다면  $1/n$  비율대로 지급이 됩니다.  
다만, 예전에는 예산이 있어도 기중치가 적용되어 그 예산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- 위원장: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윤기창)
- 위원: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의 부칙에 ‘이)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’(김준성) 라고 되어있는데 일부개정안의 시행은 공포일부터가 맞고 단서조항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라고 시행한다고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?

- 교무과팀장: 올해 초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지급계획안에 3월 1일부터 시행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시행도 3월 1일부터입니다.
- 위원: 그래도 시행세칙이 지급계획의 상위법이고, 일부개정안의 시행은 공포일부터가 원칙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
- 위원장: 김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위원: 이 내용은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 실행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 
 (배현정)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위원장님께 통보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?  
 - 부서의견: 부칙 단서조항 수정

수정 전	수정 후
<p>부칙(2023. . . 규정 제 호)    이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  다만, 제5조의 “교육혁신처” 및 [별표1]의    “교육혁신처장”은 2023년 11월 23일    부터 적용한다.</p>	<p>부칙(2023. . . 규정 제 호)    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   시행한다.    제2조(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3항,    제7조제1항, 제8조제2항 및 [별표1] 지급    기준의 개정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   적용한다.</p>

( ) 5 4 6 0 2023

- 위원 동의합니다.  
 (전 체):
- 위원장: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리 후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.  
 (윤기창) 동의하십니까?
- 위원 동의합니다.  
 (전 체):
- 위원장: 「군산대학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 규정 시행세칙」 제5조  
 제2항 제3호의 ‘학사관리과’를 ‘미래교육과’로 같은 항 제4호  
 ‘학사관리과, 황룡인재교육원’를 ‘미래교육과’로 ‘취업지원과’를 ‘취업  
 지원실’로 같은 항 제5호 ‘기획평가과’를 ‘디지털교육기획과’로 정하고  
 부칙의 단서조항을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 
 주시기 바랍니다. (전원 거수)

- 위원장: 전원 찬성해 주셨습니다. 찬성 9표, 반대 0표,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수정  
(윤기창)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의사봉 3타)  
기타사항으로 회의록에 대표로 간(間)서명 해주실 위원님 3명을 추천  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위 원 엄기욱, 김준성, 배현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.  
(전 체):
- 위원장: 금일 회의에 대한 회의록에 대표로 간(間)서명 해 주실 위원님은 엄기욱,  
(윤기창) 김준성, 배현정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의사봉 3타)  
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군산대학교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 
선포합니다. (의사봉 3타) 감사합니다.

작성일 : 2023. 12. 26.(화)

▷ 위 원 장 : 윤 기 창 (서명) | 장

▷ 간 사 : 전 영 아 (서명)

▷ 기 록 자 : 최 지 우 (서명)